「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」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2024년 12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101 호

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(인권경영선언) 중 "인권경영선언문"을 "인권경영 헌장"로 하고 "선언문"을 "헌장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 부 서	안 전 감 사 부
이	직 위 성 명	안 전 감 사 부 장 강 승 구
안	직 위 성 명	청 렴 감 사 팀 장 이 태 권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의 화 (380-5816)

인권경영 헌장

군포도시공사는 시민께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최고공기업을 지향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권경영을 선도하여 인류 보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. 이를 위해 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.

- 하나, 우리는 UN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.
- 하나, 우리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투명경영을 한다.
- 하나,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나이, 인종, 종교, 장애, 성별, 출생지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.
- 하나,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.
- 하나, 우리는 정부, 경기도, 군포시, 지역주민, 협력업체 등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.
- 하나, 우리는 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.
- 하나, 우리는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하나, 국내·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.
- 하나, 우리는 지역개발 등에 있어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하나,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
군포도시공사

#